「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소진혁 의원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16인

3. 제안이유

○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책무 등(안 제1조～제4조)

나. 조합 활성화 촉진, 조합 경영 등 지원(안 제5조～제6조)

다. 공동사업 지원, 부지 및 시설 지원(안 제7조～제8조)

라. 경비 보조, 홍보, 위탁, 포상(안 제9조～제12조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, 제9조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3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
4) 「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음.

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비롯하여 경영·기술 자문, 판로 촉진, 공동사업 및 공유재산(부지·시설)의 무상 대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음.
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 경비 보조, 홍보 및 인식 확산, 사무의 위탁, 우수 조합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였음.

-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